

# 2022년 3분기 노사협의회

- 개최일시: '22. 9. 30.(금) 15:30
- 개최장소:
- 협의회 내용

구분	구 분	비고
개회	-	의장
보고사항	2022년 김해시 산하 통합채용 추진현황	
협의사항	법정 자격선임 관리자 수당 신설 요청 협의	
의결사항	의결사항 없음	-
산회	-	의장

**김해시도시개발공사 노사협의회**

# 3분기 노사협의회

## 1 보고사항

- 사용자측 보고사항
  - 2022년 김해시 산하 통합채용 추진현황

2

협의사항

□ 제1안: 법정 자격선임 관리자 수당 신설 요청 협의

근로자측 요구 안건

□ 현행

- 공사 보수규정의 기술수당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자격선임 관리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음. 현재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자격증을 소유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종사자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전기·위험물·도시가스 등 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됨

□ 문제점

- 수당규정 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다 보니 기관 운영 현실과 다른 사항 발생(관련 법 적용이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다름)
- 법적 근거에 따른 자격선임의 경우 선임자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이 부여되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경우는 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 책임이 따름
- 수당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은 동일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전무하여 형평성에 위배

□ (개선방안)

- 법적 근거에 따라 선임된 모든 관리자에게 기술정보 수당 지급
- 공사 수당지급 기준표 개선 요청(안)

수 당 지 급 기 준 표

구 분	수 당 명	지급을 및 지급액	비 고
3. 특수 근무 수당	특수업무수당 ②기술정보수당	가)전기,기계,전산,조경,토목,건축,운전,조리의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자 나)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다)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라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마)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충족하여 관리자로 선임된 자	· 일반3급 : 월 50,000원이하 · 일반4,5급 : 월 30,000원이하 · 일반6급이하 : 월 20,000원이하 ※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자 및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가산금 지급 - 기술사 : 월 100,000원이하 - 기능장·기사 : 월 30,000원이하 - 산업기사 : 월 20,000원이하 - 운전업무종사자 중 일반5급 : 월10,000원 - 운전업무종사자 중 일반6급이하 : 월20,000원

근로자측 개선방안

사용자측 입장 (검토의견)

□ 검토사항

- 공사 「보수규정」 [별표5] 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
-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자 중 운전분야 및 전기·위험물·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제외하고는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 병급 지급이 불가함.

※ 보수규정 [별표 5] 수당지급표 단서조항

다만, 기술정보수당 받는 자 중 가)항목의 운전분야 및 나), 다)항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 병급할 수 없다.

□ 검토의견

- 규정 개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대상자 및 수당 추가 지급시 소요예산 등 관련 사항을 김해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

### 3

## 의결사항

해당없음